

# 금천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 1. 제안이유

금천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위탁기간이 2024. 6. 30.자로 만료됨에 따라 공개 모집 및 적격자선정심의위원회 운영을 통해 역량 있는 위탁체를 선정하여 투명하고 안정적으로 센터를 운영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대상시설

#### 1) 시설현황

시설명	소재지	시설면적	종사자수	비고
금천구청소년 상담복지센터	금하로30길 54, 2층 (시립청소년센터 내)	200m <sup>2</sup>	16명	

#### 2) 위탁현황

가) 수탁기관 : (재)푸른나무재단 (대표 : 박길성)

나) 위탁기간 : 2021 7. 1. ~ 2024. 6. 30. (최초위탁 : 2013. 7. 1.)

다) 운영인력 : 총 16명

라) 운영예산 : 601,078천원(국 136,765, 시 175,817, 구비 288,496)

### 나. 주요위탁 내용

1) 위탁기간 : 3년(2024. 7. 1. ~ 2027. 6. 30.)

- 2) 위탁내용 : 금천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및 관리 전반
  - 가) 위기청소년 조기발견·보고 및 지원을 위한 활동 지원
  - 나) 상담전화(청소년전화 1388) 운영
  - 다) 위기청소년 상담 및 통합지원서비스 제공 및 연계
  - 라)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3) 선정방법 : 공개모집 및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사를 통한 선정
- 4) 운 영 비 : 연601백만원(국 137, 시 176, 구비 288)

### 3. 재위탁 사유

- 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청소년들에게 복지서비스와 안전망의 역할을 수행하는 전문적인 청소년 상담기관임.
- 나.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금천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수탁자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는 규정에 따라 수탁법인 공개모집 및 수탁자 적격자선정 심사를 거쳐 금천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함.

###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 제42조의2, 시행규칙 제22조 및 제23조
- 2) 금천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 제13조, 제14조 및 제15조
- 3)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 제6조, 제7조 제7조의2 및 제9조

나.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결과 : 민간위탁 재위탁 추진

- 1) 24개 자치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현황 조사 결과 모든 자치구에서 전문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 2) 금천구청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전문적인 청소년 상담 및 복지지원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을 통한 효율적인 운영 추구

# 관계법령

## 청소년복지 지원법

### 법 제29조(청소년상담복지센터)

-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청소년에 대한 상담·긴급구조·자활·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법 제42조의2(청소년복지지원기관 등의 위탁운영)

- ① 이 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청소년복지지원기관 또는 청소년복지시설은 필요한 경우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시행규칙 제22조(위탁운영의 기준 및 방법 등)

- ② 제1항에 따른 수탁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을 설치하려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③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지명한다.
1. 청소년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청소년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위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 ④ 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시행규칙 제23조(위탁계약의 내용)

-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위탁계약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위탁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5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소년 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9조 (운영의 위탁)

- ① 구청장은 청소년시설의 관리·운영(이하 “운영”이라 한다)을 비영리법인 또는 청소년단체, 종교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청소년시설을 위탁·운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며, 예산·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하게 할 수 있다.

## 제13조 (위원회 구성·운영)

-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운영한다.
- ②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해당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에 의하여 선출하며 심사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③ 위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소년업무담당팀장이 된다.
- 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⑥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청소년시설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청소년시설의 수탁자 선정을 위한 위원회 회의에 참여할 수 없다

제14조 (수탁범위) 수탁범위는 청소년시설의 시설관리 및 운영권 전체로 한다.

## 제15조 (수탁기간)

수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재위탁을 할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일 90일전 까지 위탁운영 신청서를 받아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수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 제4조의3(구의회 동의 및 보고)

① 구청장은 자치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이하 “구의회” 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자치사무를 재위탁 또는 재계약할 때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동의를 갈음한다.

### 제6조(수탁기관 선정)

① 수탁기관 선정은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 제7조(적격자선정심의위원회)

제7조(적격자선정심의위원회)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심의가 끝나면 위원회는 해산한 것으로 본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2호 이하의 위촉직 위원의 수를 성별을 고려하여 2분의 1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1.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해당 부서의 국장과 과장, 민간위탁총괄 담당과장을 포함한 관계 공무원
  2. 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
  3. 변호사·공인회계사·기술사·건축사 또는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
  4.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5. 대학에서 해당 민간위탁사무 분야와 관련된 학과를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의 대학교수
  6. 그 밖에 위원회 심의의 전문성·공정성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전체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7조의2(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2. 수탁기관 선정 시 적격자 심의

### 제9조(계약의 체결 등)

②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